

소 장

원 고 정인섭(750527-*****)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70, 202호 (와동, 다세대주택)
송달주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호(고잔동 707, 안산법조타운)

피 고 김주엽
주소불명
(휴대전화: 010-9393-****)

동업계약관계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경 체결된 더캠 운영에 대한 동업계약은 피고가 2017. 1. 26. 탈퇴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및 그 해지(탈퇴)의 경위

가. 동업계약의 시작 및 부도위기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각자 5,000만원씩 상호 출자하여 더캠이라는 전자부품(PCB) 제조업을 공동운영하고 회사와 관련된 외부활동 및 금융권 관련 업무는 피고가 맡고 회사 내부적인 실무는 원고가 맡는 한편, 수익과 부채 등 손실에 대하여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년까지 더 캠을 운영하며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2016년경 주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소유중이던 관련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고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참조).

나. 피고의 동업계약의 탈퇴 및 계약해지

이에 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년 넘게 계속해온 PCB제조업인 더캠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관련 산업이 사양길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준비 중이던 키즈카페 등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2016. 11.경 더캠의 폐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더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더캠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보유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 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전화)031-411-1854, 팩스)031-403-7704

장비와 관련된 부채는 원고가 모두 끌어안기로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참조).

이에 원고가 2017. 1. 26.까지 피고의 출자금 5,000만원을 모두 돌려 주면서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다. 소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간에 2013. 4.경 체결된 더캠운영에 대한 동업계약은 합의해지(피고의 탈퇴로)로 2017. 1. 26. 종료되었습니다.

2. 원고의 5,000만원 반환채권의 성립

가. 용도가 정해진 금전의 지급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기업은행 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명의 부분인 5,000만원을 변제한 후 대출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사업자명의를 공동명에서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2018. 8.부터 2019. 12. 까지 피고에게 신용보증기금대출금 변제용도로 대략 매월 300여원씩 총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 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전화)031-411-1854, 팩스)031-403-7704

하지만, 피고는 이를 개인용으로 써버리고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갑 제5호증 참조).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나. 소결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동업계약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이유

가. 피고의 더캠 동업계약 탈퇴 후 행보

피고는 더 캠에 대한 동업계약에서 탈퇴후 원고에게 PCB사업은 미래가 없다며 원고에게 다른 사업을 권유하고 송도에서 키즈카페를 개업하기도 하고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크리스털 조명 사업이나 입주청소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기업에 취직시도를 하였으나 모조리 실패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더캠의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취직에 대한 청탁을 하는데 이르렀습니다(갑 제6호증 15쪽 참조).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 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전화)031-411-1854, 팩스)031-403-7704

나. 더캠의 정상운영 복귀와 피고의 억지 부림

더 캠은 피고가 원고와 동업계약 해지한 이후 2017년부터 2020년 7월 경까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0년 8월부터 매출이 증가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배우자인 소 외 박수영과 함께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리 운전과 각종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직원들 급여 및 각종 세금과 비용처리를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지급하면서 더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17년 이후 진행하던 자신의 사업들이 실패하여 금전적으로 힘들어지자 2021. 4.부터 동업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던 사업자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한 결제를 방해하는 한편, 2017. 1.이후 5년간의 수익의 50%를 요구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참조).

다. 확인의 이익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간에 더캠 운영에 대한 동업계약은 2017. 1. 26. 이미 피고의 탈퇴(합의해지) 및 청산금의 지급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21. 4.경부터 위 탈퇴 및 합의해지에 반하여 동업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그 동안의 수익금의 배분을 요구하며 원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현재 더 캠 운영과 관련하여 현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 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전화)031-411-1854, 팩스)031-403-7704

존하는 법률상 불안과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법률상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동업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바입니다.

라. 소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동업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결 어

이와 같은 이유로 부득이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계약의 부존재확인 및 피고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변제용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원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게 되었는데 바부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306 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전화)031-411-1854, 팩스)031-403-7704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더캠 사업자등록증 |
| 2. 갑 제2호증 | 더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3. 갑 제3호증 | 청산금 지급 내역 |
| 4. 갑 제4호증 | 신용보증기금 관련 자료 |
| 5. 갑 제5호증 | 반환청구 근거 자료 |
| 6. 갑 제6호증 | 피고 탈퇴 이후 자료 |
| 7. 갑 제7호증 | 피고의 역지의 이유 |
| 8. 갑 제8호증 | 내용증명서 |
| 9. 갑 제9호증 | 원고 진술서 |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2021.05.0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현

안산지원 귀중